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32
----------	-------

발의연월일 : 2025. 7. 22.

발 의 자 : 임미애 · 김원이 · 김 윤
문대림 · 박홍배 · 서삼석
송옥주 · 이병진 · 이연희
주철현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 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되어서야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통보해 어업인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대부분의 어업인은 지원금으로 채무와 인건비를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이 없어 납세 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과세 대상인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 내 감척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 어선을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어로 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소

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u> <u>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 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 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 3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 어선을 양도 후 5년 이내 에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 차하여 어로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u>